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4. 5. 14 조례 제1862호
일부개정 2011. 2. 8 조례 제2304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5. 4. 24 조례 제2624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7. 5. 18 조례 제281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7. 7. 13 조례 제285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(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7. 13>

[전문개정 2015. 4. 24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정신질환자”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5. 4. 24, 2017. 7. 13>

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만안구보건소에 둔다. <개정 2017. 5. 18, 2017. 7. 13>

② 센터는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

③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13>

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하여 관리·운영한다.

⑤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13>

[전문개정 2015. 4. 24]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
2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

3. 정신질환자 발견·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연계사업
4.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
5. 자살예방사업
6.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
7.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
8.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프로그램운영
9.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, 정신보건사업 관련 인력 교육·훈련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
[전문개정 2017. 7. 13]

제5조(위탁)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7. 13>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3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4. 24]

제5조의2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19. 11. 15>

[본조신설 2015. 4. 24]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4. 24>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

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4. 24>

제7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24>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3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24>

제8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4. 24]

제9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24>

1. 전염병환자
2.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0조 삭제 <2015. 4. 24>

제11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2조(변상책임)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역보건법」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 4. 24, 2017. 7. 13>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

2015. 4. 24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8 조례 제2304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안양시만안구보건소”를 “안양시보건소”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15. 4. 24 조례 제26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5. 18 조례 제281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「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안양시보건소”를 “만안구보건소”로 한다.

⑤ 부터 ⑱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7. 13 조례 제28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㊴ 까지 생략

㊵「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안양시 사무의

민간위탁 조례"로 한다.

㊶ 부터 ㊾ 까지 생략